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7호 2016. 2. 5(금)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263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264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265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15
- 사천시 조례 제126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267호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35
- 사천시 조례 제1268호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269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사천시 조례 제1270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12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사천시 규칙 제613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4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5-156호 학촌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 4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월 5만원” 을 “월 8만원”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2016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5)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분석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분석평가위원회는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 내에서 별도 구성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6)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참여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7)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복지증진)**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8)

**제17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주간)**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9)

##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단체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0)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제30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1)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2)

4.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3)

**제3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규정의 적용)** 기금을 관리할 때 이 조례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6장 보 칙

**제3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조성된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양성평등 위원회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5)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6)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사천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천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천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7)

## 조 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8)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19)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사천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0)

##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1)

**제9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3)

②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설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4)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1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5)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6)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를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를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1.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7)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제9조 본문 중 “제43조제1항제8호에” 를 “제43조제4항제8호에” 로 한다.

제10조제2호 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다목 중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을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12조의3과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2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포함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8)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방재계획
4.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제12조의4(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제2호 중 “330제곱미터” 를 “60제곱미터” 로,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200제곱미터” 를 각각 “60제곱미터” 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창고를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하는 경우” 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27조제2호, 제28조제2호, 제29조제3호, 제30조제2호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를 각각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로 한다.

제27조제3호, 제28조제3호, 제29조제4호, 제30조제3호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를 각각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29)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자목제35조제8호, 제36조제9호가목, 제38조제9호, 제43조제11호, 제44조제12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을 각각 “식품공장” 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제3호 라목의” 를 “제2호 마목의”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제38조제9호다목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으로 한다.

제36조제9호가목 중 “아파트형 공장,” 을 “지식산업센터” 로 한다.

제4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45조제16호 가목 중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 을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0)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46조 본문 중 “제3항” 을 “제3항과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 를 “제2조제8호” 로 하고, 제6호의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를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7.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9.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1)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10.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2항 중 “제6항” 을 “제7항” 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2)

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9조제1항제2호 중 “130퍼센트 이하” 를 “150퍼센트 이하” 로, 같은 항 제3호 중 “170퍼센트 이하” 를 “200퍼센트 이하” 로, 같은 항 제4호 중 “230퍼센트 이하” 를 “250퍼센트 이하” 로, 같은 항 제5호 중 “270퍼센트 이하” 를 “300퍼센트 이하” 로, 같은 항 제6호 중 “300퍼센트 이하” 를 “400퍼센트 이하” 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3)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2조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명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4)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자문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  
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심의(자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의 조례를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5)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6)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7)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무위원회” 를 “행정위원회”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총무위원회” 를 “행정위원회” 로 하고 “산업건설국, 보  
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를 “산업건설국, 우주항공국, 보건  
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8)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삼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제6조 중 “심의를 거쳐”를 “심의 결과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는 2015년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39)

##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0)

[별표]

## 전문위원별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위	직급
행정위원회	행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1)

사천시 규칙 제613호

규 칙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2제1항 중 “30분” 을 “1시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2)

## 공 고

### 학촌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사천시공고 제2016-156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촌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1.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내용

- 가. 공사의 명칭 : 학촌소하천 정비공사
-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건설과장)
- 다. 세부정비 시행계획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학촌천	학촌소하천 정비공사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4	1,020	1,020	교량 9개소	2016. 2월	2017. 12월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상 1식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에 관한 명세 : 별첨 - 열람장소 비치

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열람

- 가. 열람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831-3270)
- 다. 열람서류 : 설계도서, 위치도 등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3)

## 학 촌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학촌소하천 정비공사

### 2.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공사목적

- 본 사업은 학촌소하천의 하천 미개수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및 농경지 유실 등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낙후된 지역의 균형 개발에 견인차 역할 및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을 해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소하천정비 L=1,020m, 교량 9개소 등

#### 1) 축 제 공

- 흙깎기:11,177.0m<sup>3</sup> ○ 흙쌓기:2,727.0m<sup>3</sup> ○ 사 토:11,847.0m<sup>3</sup>

#### 2) 호 안 공

- 전석쌓기(0.3m<sup>3</sup>급) : 4,048.0m<sup>2</sup> ○ 식생매트 : 757.0m<sup>2</sup>  
○ 생태섬조성 : 6개소

#### 3) 교 량 공

- Box교량:3개소 ○ 슬래브교:5개소 ○ 목교량:1개소

#### 4) 용 배 수 공

- L형측구:L=60.0m ○ U형수로:L=85.0m ○ BOX설치(1.0x1.0):L=41.0m

#### 5) 오 수 공

- 오수관로(Φ150mm): 70.0m ○ 오수관로(Φ250mm): 11.0m  
○ 오수관로(Φ250mm): 51.0m ○ 조립식PC맨홀(1호): 12.0개소

#### 6) 상 수 공 : ○ 상수관로(Φ50mm): 206.0m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4)

## 7) 구 조 물 공

- 사방댐설치(H=1.3m, L=15.0m): 1개소
- 취입보및낙차공(자연형): 4개소
- 하상보호공(자연형): 10개소

## 8)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 3,192m<sup>2</sup>
- 콘크리트포장: 388m<sup>2</sup>
- 사리부설: 308m<sup>2</sup>
- 점토블럭포장: 424m<sup>2</sup>

## 9) 조 경 공

- 조경식재및시설물: 1식

## 10) 부 대 공 : 1식

### 3.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사천시청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4.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16. 01. ~ 2018. 12.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별첨 참조

###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사천시청 건설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 8. 실시설계도서 : 설계도서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5)

9. 예정 공정표 : 설계도서 참조

10.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

(단위:백만원)

공종	계			2015년			2016년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사업비	3,500	1,750	1,750	280	140	140	3,220	1,610	1,610	

○ 자금조달방안 : 국고50%, 지방비(시비) 50%로 예산확보 시행

11.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친환경적인 자연형 호안공법 적용

12. 관련도서는 사천시청 건설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설과(☎055-831-3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6)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7)

## ◎ 편입용지조서

일련번호	위 치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종류및내용	비 고
	면	리	지 번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정동	학촌	132	천	2,649	2,649	국)농림축산 식품부					
2	정동	학촌	133	도	1,881	11	국)농림축산 식품부					
3	정동	학촌	664-6	대	90	61	사천시					
4	정동	학촌	664-9	대	1	1	하봉록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1				
5	정동	학촌	664-8	대	41	41	사천시					
6	정동	학촌	890-1	도	414	230	국)건설부					
7	정동	학촌	664-10	대	25	25	정선화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21				
8	정동	학촌	664-3	도	129	76	사천시					
9	정동	학촌	666-5	도	41	41	정재규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6-1				
10	정동	학촌	666-3	대	25	25	사천시					
11	정동	학촌	666-4	대	6	6	사천시					
12	정동	학촌	666-6	대	159	159	하재경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9,1102호(나라스카이빌)				
13	정동	학촌	667-4	전	13	13	하재경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9,1102호(나라스카이빌)				
14	정동	학촌	667-3	창	55	55	학촌새마을 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15	정동	학촌	676-6	과	298	298	이균형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9				
16	정동	학촌	675-1	과	174	174	이균형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9				
17	정동	학촌	673-1	대	158	158	최진도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아 파트 211동204호				
18	정동	학촌	892	도	2,274	16	국)건설부					
19	정동	학촌	748-3	전	79	79	최진도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아 파트 211동204호				
20	정동	학촌	748-4	도	30	30	정윤용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8-2				
21	정동	학촌	749-3	도	20	20	구암토지주 식회사	사천읍 구암리 273				
22	정동	학촌	749-5	대	116	116	이균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1	정동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23	정동	학촌	643-9	답	83	83	이욱자	사천시 정동면 학촌안길 49				
24	정동	학촌	643-13	대	15	15	학촌새마을 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25	정동	학촌	643-12	대	6	6	학촌새마을 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26	정동	학촌	643-11	도	11	11	이희조 외4 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3				
27	정동	학촌	899	도	320	153	국)건설부					
28	정동	학촌	638-3	전	12	12	정효양	진주시 상대동 301-26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8)

일련 번호	위 치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중 류및내용	비 고
	면	리	지 번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정동	학촌	639-1	대	119	119	정만수 외 4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18				
30	정동	학촌	637-3	대	8	8	황성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51				
31	정동	학촌	638-2	전	44	44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32	정동	학촌	638-1	전	56	56	정효양	진주시 상대동 301-26				
33	정동	학촌	637-1	대	336	336	황성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51				
34	정동	학촌	635	대	605	605	정연정외1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5	정동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35	정동	학촌	634-1	도	23	23	강순달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				
36	정동	학촌	634-5	전	79	79	강순달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				
37	정동	학촌	634-7	답	95	95	강순달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				
38	정동	학촌	643-5	도	238	238	이희조	대구 서구 평리동 1410 평 리아파트 5동517호				
39	정동	학촌	643-10	전	269	269	하기조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7				
40	정동	학촌	899-2	도	123	123	국)건설부					
41	정동	학촌	755	도	66	66	주용태	사천시정동면강곡리				
42	정동	학촌	754-2	전	7	7	정기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10, 702동 601호				
43	정동	학촌	756-1	전	53	53	정임숙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북 17길 11 (회원동)				
44	정동	학촌	757-1	전	124	124	정민교외1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0				
45	정동	학촌	761-2	도	43	43	일천청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1-2				
46	정동	학촌	761-1	전	760	760	정연섭외1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1				
47	정동	학촌	762	전	1,336	1,336	정민교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0				
48	정동	학촌	765-1	전	44	44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4				
49	정동	학촌	765-2	전	119	119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5				
50	정동	학촌	765-3	전	70	70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6	정동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51	정동	학촌	874-4	구	8,679	3,202	국)농림축산 식품부					
52	정동	학촌	산117-6	임	28	28	전일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17-1				
53	정동	학촌	773	답	112	112	하계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2				
54	정동	학촌	772-1	답	77	77	박옥순	사천시 정동면 학촌길 176-7				
55	정동	학촌	131-10	도	56	56	학촌새마을 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56	정동	학촌	131-14	답	31	31	정운태	진해시 청안동 471-203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49)

일련번호	위 치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종류및내용	비 고
	면	리	지 번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7	정동	학촌	131-9	도	4	4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58	정동	학촌	131-13	답	99	99	하계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42-5				
59	정동	학촌	131-8	도	2	2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60	정동	학촌	131-12	답	356	356	하계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42-5				
61	정동	학촌	130	구	182	182	국)농림축산식품부					
62	정동	학촌	131-7	도	5	5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63	정동	학촌	131-6	도	3	3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64	정동	학촌	131-11	답	50	50	하계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42-5				
65	정동	학촌	160-2	도	9	9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66	정동	학촌	160-4	답	105	105	정연규	경남 마산시 교방동 28-6				
67	정동	학촌	160-3	도	42	42	학촌새마을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7				
68	정동	학촌	160-5	답	214	214	이군한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9				
69	정동	학촌	161	도	370	60	국)농림축산식품부					
70	정동	학촌	161-2	목	922	922	진동실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216	사천삼천포 축산업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	근저당권, 지상권	
71	정동	학촌	159-3	답	7	7	전명규	경남 거제시 옥포동 874-1 석천아트타운 108-307				
72	정동	학촌	158-3	답	83	83	하계경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9,1102호(나라스카이빌)				
73	정동	학촌	128	구	1,760	156	국)농림축산식품부					
74	정동	학촌	158-2	목	136	136	하계경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9,1102호(나라스카이빌)	정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75	정동	학촌	122	도	3,390	60	국)농림축산식품부					
76	정동	학촌	157-3	답	520	52	하용수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1	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사천시지부)	근저당권	
77	정동	학촌	157-2	답	182	182	김영자	사천시 정동면 학촌길 176-15	정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78	정동	학촌	156-3	답	51	51	김영자	사천시 정동면 학촌길 176-15	정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79	정동	학촌	156-4	대	118	118	전상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17-1	사천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 51	근저당권	
80	정동	학촌	649-12	답	8	8	전석봉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17-1				
81	정동	학촌	672-2	도	50	50	정덕화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6				
82	정동	학촌	645-3	도	93	93	정희식	부산 서구 괴정1동 547-1				
83	정동	학촌	153-2	답	59	59	정양화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7				
84	정동	학촌	152-4	답	9	9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4				

# 사 천 시 공 보

제437호(50)

일 련 번 호	위 치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종 류및내용	비 고
	면	리	지 번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85	정동	학촌	152-3	대	5	5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4				
86	정동	학촌	151	도	655	73	국)농림축산 식품부					
87	정동	학촌	644-1	도	410	410	서쌍이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				
88	정동	학촌	644-3	대	413	413	최광경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4				
89	정동	학촌	893	도	744	463	국)건설부					
90	정동	학촌	874-9	구	2,327	2,327	국)농림축산 식품부					
91	정동	학촌	623-4	대	96	96	김은순	사천시정동면학촌리 623-1	정동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92	정동	학촌	625-1	대	103	103	정성교	사천시정동면학촌리 617				
93	정동	학촌	634-3	구	136	136	국)농림축산 식품부					
94	정동	학촌	634-8	구	5	5	영일정씨촌 자파종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3				
95	정동	학촌	899-1	도	59	59	국)건설부					
96	정동	학촌	785-2	도	20	20	정낙교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0				
97	정동	학촌	785-3	전	33	33	박옥순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76-7				
98	정동	학촌	902	도	516	87	국)건설부					
99	정동	학촌	784-2	도	13	13	최인주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00				
100	정동	학촌	784-3	전	62	62	곽두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9				
101	정동	학촌	903	도	661	120	국)건설부					
102	정동	학촌	783-1	전	35	35	정대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94 28, 304동 402호				
103	정동	학촌	781-1	목	36	36	정철화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03	정동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2	근저당권	
104	정동	학촌	779-1	전	171	171	정연섭외1인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1				
105	정동	학촌	778-3	답	600	600	최진도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아 파트 211동204호				
106	정동	학촌	778-4	답	208	208	하계선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42-5				
<b>합 계</b>						<b>38,362</b>	<b>21,279</b>					